



: 2020-11-19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132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동 ■

피고, 피항소인 ■ 시장

■

■

제 1 심 판 결 ■ 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단1096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지방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안전부가 2010. 8.경 마련한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산품 매장의 경우 B조합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D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당연히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14조 제3항에서 []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10. 8.경 이 사건 운영요령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B조합의 경우 「①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목적사업인



판매사업에 해당하여 비조합원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하지만, ② '공산품 매장'은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현황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읍·면지역은 (지역 B조합이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면제 요건인 'B조합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지리적 특성, 조합원의 이용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지를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당해 부동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운영요령은 그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운영요령 중 '읍·면지역의 공산품 매장'과 관련한 내용은, 읍·면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구성되어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읍·면지역에는 일반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B조합이 위와 같은 조합원에게 공산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④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D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지역으로 인구가 무려 5만여 명에 이르는 반면 원고의 조합원 수는 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로컬푸드직매장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규모의 생활용품 판매점이 다수 존재하며, 주변에 있는 호남지역의 대표 무역항인 H, 대표기업인 I, 대표산업단지의 하나인 J 등의 배후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상 도시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운영요령이 예정한 읍·면지역과 그 실질이 상당히 다르다(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위 법 제6조 제1호)'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구역 상 "읍"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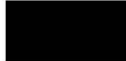
3. 결론



: 2020-11-19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2020-11-19

[별지]

지방세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자	과세대상	세목	과세액
2018. 8. 2.	[redacted]시 [redacted] 건물 524.91㎡	취득세	743,280
		농어촌특별세	62,240
	[redacted]시 [redacted] 건물 277.79㎡ 중축	취득세	51,859,040
		지방교육세	2,551,780
2018. 8. 3.	[redacted]시 [redacted] 외 23건 (면적 4,749.80㎡) (2015년분)	농어촌특별세	3,189,730
		재산세	2,835,680
	[redacted]시 [redacted] 외 21건 (면적 5,710.30㎡) (2016년분)	지방교육세	569,670
		재산세	3,835,920
	[redacted]시 [redacted] 외 21건 (면적 5,710.30㎡) (2017년분)	지방교육세	799,200
		재산세	4,194,590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 (2015년분)	지방교육세	873,360
		재산세	899,210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 (2016년분)	지방교육세	179,840
		재산세	869,810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 (2017년분)	지방교육세	173,960
		재산세	890,690
		지방교육세	188,380
	2018. 9. 10.	[redacted]시 [redacted] 외 22건 (면적 4,045.40㎡) (2018년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564,540
합계⇒			83,661,320

끝.